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운영지침**

**2025년**

**서울경제진흥원**

# 목 차

1. 목 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1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나. 지원유형 관련 용어 .....	2
다. 위원회 관련 용어 .....	2
라. 협약 관련 용어 .....	2
마. 평가 관련 용어 .....	2
바. 기타 관련 용어 .....	4
4. 추진체계 및 절차 .....	4
가. 추진체계 .....	4
나. 추진절차 .....	8
5. 기술수요조사 등 .....	10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	10
7. 과제 선정평가 .....	10
가. 선정평가 절차 .....	10
나. 서류평가 .....	10
다. 실증기관 의견조회 .....	11
라. 발표평가 .....	12
마. 현장점검 .....	13
바. 최종선정위원회 .....	13
사. 선정결과 통보 .....	13
아. 평가결과 공시 .....	13
자. 기타 사항 .....	14
8. 요건검토 .....	14
가. 검토 시기 .....	14
나. 가점 및 감점 검토 .....	14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	15
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15

나. 비목별 산정용도 .....	15
다. 연구개발비의 조정 .....	15
라. 비목별 산정기준 .....	16
마. 연구개발비의 조정 및 지급 .....	20
바. 시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	20
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
<b>10. 협약 .....</b>	<b>20</b>
가. 협약의 체결 .....	21
나. 협약의 변경 .....	23
다. 협약체결의 중지 .....	23
라. 협약의 해약 .....	23
<b>11. 시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b>	<b>23</b>
<b>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b>	<b>23</b>
<b>1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b>	<b>23</b>
가. 연구개발기관의 분기보고서 .....	23
나. 실증기관 중간점검 .....	23
<b>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b>	<b>24</b>
가. 최종평가 .....	24
나. 실증확인서 .....	26
<b>15. 문제과제 등의 처리 .....</b>	<b>26</b>
가. 현장점검 .....	26
나. 특별평가 .....	27
<b>16.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b>	<b>28</b>
가. 실증 결과물의 귀속 .....	28
<b>17. 기술료 징수 및 관리 .....</b>	<b>28</b>
<b>18. 제재 및 환수 관리 .....</b>	<b>28</b>
<b>19. 기타사항 .....</b>	<b>29</b>
부 칙 .....	29

## 1. 목 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업지원 조례'라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4차 산업혁명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3.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 용어의 정의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을 말한다.
- 2) '실증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실증기관 중 실증을 주요하게 관할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4) '협조부서'란 실증기관 중 '주관부서'를 제외한 부서로, 실증에 대해 보조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5) '해외실증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실증 시, 해당 해외 실증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기업을 말한다. 단, '서울시 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 또는 사업자등록증(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한다.
-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8)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 외국법인(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공동연구개발기관 한정))을 말한다.

- 9) '연구책임자'란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 나. 지원유형 관련 용어

- 1) '수요과제'란 실증기관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기관에게 제안하는 과제를 말한다.
- 2) '자유과제'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실증기관을 매칭하고 실증할 내용을 제안하는 과제를 말한다.

유형명	실증기관	방 식	실증기관 수용 확인
수요과제	국내/외 공공, 국내/외 민간	실증기관 수요 사전조사 → 기술기업 제안	필 요
자유과제	국내 공공, 해외 국내 민간	기술기업 자유 제안 → 실증기관 매칭	불필요

## 다. 위원회 관련 용어

-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선정·최종·특별평가와 연차 점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2) '제재조치평가단'이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종류·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라. 협약 관련 용어

- 1)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차별(연구개발 과제 시작일로부터 12월 단위)로 구분되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 마. 평가 관련 용어

- 1) '수요조사서'란 총괄기관이 시행하는 수요조사에 대해 실증기관이 기술개요, 실증계획 등 수요 내용에 대한 개요 등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 2) '실증기관 의견조회'란 총괄기관(서울시)에서 서류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로 실증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현황, 기술 적용효과, 수용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의견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수용과제'란 실증기관 의견조회 검토 결과, '수용' 판정 받은 과제를 말한다.
- 4) '실증계획 수립'이란 선정 이후 및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기관과 실증기관 간

- 실증 종료 후 실증일정 및 방법, 사용권, 소유권 등 실증 결과의 권리에 대한 상호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 5) '과제 선정평가'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 가) '서류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하며, 필요 시 생략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나) '발표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특별평가'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연구개발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 7) '최종평가'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 및 개발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8) '중간점검'이란 전문기관이 기술개발 진척도, 사업화 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현황 등을 연구개발기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9) '현장점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의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인프라 등을 연구개발기관에 방문하여 검토하는 것
    - 나) 비정상적 연구개발비 과다사용,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임의사용, 연구개발비 임의환원, 세부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에 방문하여 검토하는 것
  - 10) '비즈니스 인터뷰'란 해외 과제 선정평가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실증기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11) '신청과제'란 과제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 12) '신규과제'란 지원 해당년도 과제 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 13) '예비과제'란 과제 선정평가를 통해 우선 선정된 과제의 후순위 과제로, 협약 포기·중단 등의 사유로 추가지원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지원을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과제를 말한다.
  - 14) '완료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 15) '미완료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 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미흡' 또는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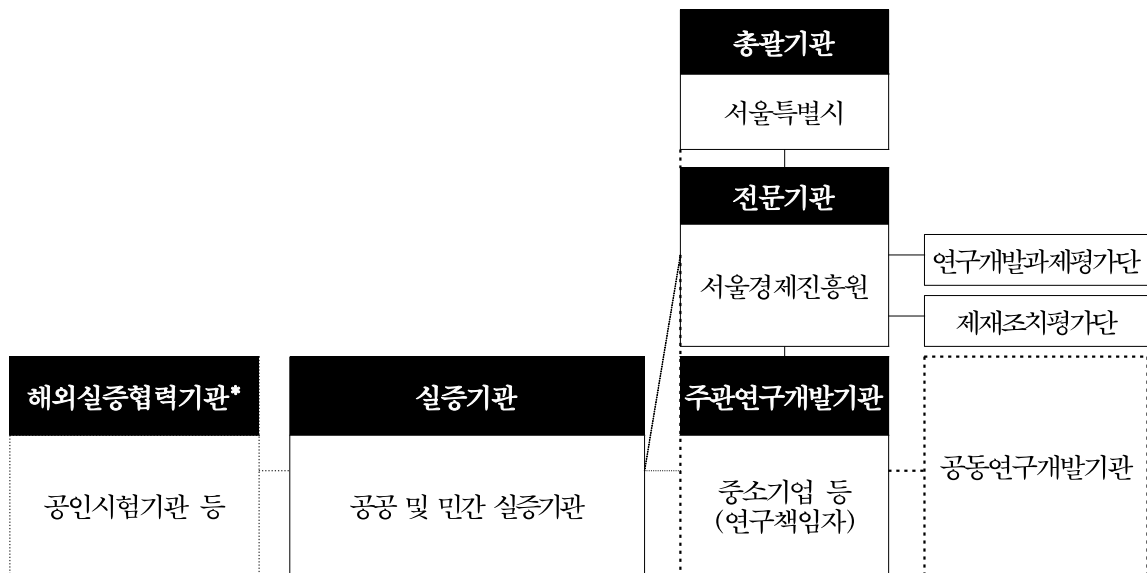
- 16) '문제과제'란 최종평가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 특별평가 결과 중단 또는 수사의뢰 검토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 17) '조기완료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특별평가에서 '조기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 18) '종합평점'이란 최종평가에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 19) '최종선정위원회'란 연구개발과제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써, 분과위원회 평가점수 및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20) '실증확인서'란 총괄기관이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에게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하며, 실증확인서를 통해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 실적으로 제출하여 판로개척에 활용할 수 있다.

#### 바. 기타 관련 용어

기타 관련용어의 정의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4. 추진체계 및 절차

#### 가. 추진체계



※ 해외실증 사업만 해당

〈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담당기관
총괄기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구성·운영	서울경제진흥원

구분	주요 역할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변경,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후관리</li> <li>• 연구개발비 정산 등</li> <li>•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기관의 지정·운영</li> <li>• 현장조사(평가) 및 현장점검 등</li> </ul>	
주관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보급 확산 등</li> </ul>	중소기업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제 공동 수행</li> <li>• 기술개발 결과 활용 등</li> </ul>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실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결과물의 실증장소 제공</li> <li>• 성과목표 협의 및 실증 요구사안 제안</li> <li>• 실증 모니터링 진행</li> <li>• 실증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및 해외 공공기관 등</li> <li>• 민간: 대학, 종합병원, 대중견기업 및 외국법인</li> </ul>
해외실증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대상 컨설팅* 수행 *매출, 해외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li> <li>• 해외 우수 실증기관 발굴 - 수요조사를 통하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매칭을 지원하고, 상호 커뮤니티 등 협력 조율</li> <li>• 실증 모니터링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된 공인인증시험기관</li> </ul>

## 1)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1조에 따른다.

##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구성 및 운영

- ①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 또는 업종, 분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외과제의 경우 해외실증협력기관 소속 전문 평가위원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1인을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기술분야 평가위원 등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호선 또는 사업 및 평가특성에 따라 사전

지정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제재조치 포함) 대상 과제의 연구자

㉡ ㉠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조치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②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은 평가 참여 중 평가대상 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척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과제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간사는 제척 의사를 표시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초 참석 예정인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라) 간사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에 회의록 등 회의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

마) 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3)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평가단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4) 전문기관

요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

### 5)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기능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6)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기능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7) 실증기관

### 가) 자격

실증기관은 공공의 경우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및 해외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민간의 경우 대학, 병원, 기업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민간 실증기관의 자격	
기관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산학협력단
병원	- 의료법 제3조3의 종합병원
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항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외국법인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나) 기능(책임과 의무)

- ① 실증 진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지역, 주소 등)을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증 공간에 대한 사용권 또는 이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실증기관은 과제의 성과목표 확인 및 협의를 연구개발기관과 진행해야 하고, 실증기관 의견 조회 시 실증 요구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협약 체결 전에 실증결과(실증대상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연구개발기관과 실증협의를 통해 '소유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다) 실증 장소

- ① 실증기관이 공공인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실증 장소로 한다.
- ② 실증기관이 민간인 경우, 민간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실증 장소로 하되, 기술 실증이 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예: 대규모 점포, 공장 등)에는 실증 면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장소	범위	예
대규모 점포	3,000 $m^2$ 이상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공장	500 $m^2$ 이상	스마트공장, 제조공장 등
아파트	50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기타 건설현장	200 $m^2$ 이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 단일 시설물의 연면적이 위 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미만일 경우 시설물을 추가하여 총 연면적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8)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기능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나. 추진절차

### 1) 일반과제



\*수요과제에 한함

## 2) 해외 과제

추진 절차	수행 주체
공고과제 발굴*(기술 및 실증수요조사 등)	총괄기관(전문기관), 해외실증 협력기관
사업계획 공고	총괄기관(전문기관)
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서류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실증기관 의견조회	해외실증협력기관, 해외실증기관
발표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현장점검(비즈니스 인터뷰 포함)	전문기관, 해외실증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선정위원회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실증계획 수립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설치적용 모니터링	해외실증협력기관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중간점검(필요시)	해외실증협력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및 사업화 성공 판정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수요과제에 한함

## 5. 기술수요조사 등

기술수요조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1) 해외 과제의 경우 기술 수요를 해외실증 협력기관에서 수행하며, 해외실증 협력기관 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할 수 있다.
- 2) 해외 과제 중 자유과제를 공모할 경우, 해외 실증기관은 해외실증 협력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한한다.

##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과제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따른다

## 7. 과제의 선정평가

### 가. 선정평가 절차



### 나. 서류평가

서류평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1) 서류평가는 실증계획서 및 실증기관 의견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 2) 서류평가표는 하기와 같이 수행하며, 지원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증기관이 국내 공공기관인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li> <li>·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율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li> <li>- (시책과의 부합)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도</li> <li>- (시장 안착) 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성</li> <li>②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li> </ul>	40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규모)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li>- (시장의 과급성) 관련 기술·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ul>	30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 기존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li> <li>- (완성도)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TRL)</li> <li>- (실현가능성)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li> </ul>	20

〈실증기관이 국내 공공기관인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제품 단가의 적정성) 실증에 사용될 제품(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실증 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보수,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	10

〈실증기관이 국내 민간기관, 해외기관인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사업성	- (시장 규모)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시장의 과급성) 관련 기술·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50
기술성	- (완성도)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TRL) - (실현가능성)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시급성) 기술의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	30
실증 적합성	- (편익 증진)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시민편익증진 정도 - (가능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 가능성	10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제품 단가의 적정성) 실증에 사용될 제품(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실증 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보수,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	10

#### 다. 실증기관 의견 조희

- 1) 총괄기관은 과제별로 실증기관에게 기존기술 현황 및 비교, 혁신기술 적용 시장·단점, 수용·불수용 여부 등 종합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자유과제’ 중 실증기관이 ‘국내 민간’인 경우 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나, 접수 공고 시, 실증기관의 수요 및 실증 협조를 사전에 득한 후 신청해야하고, 실증기관의 수요가 없을 시, 선정 제외 할 수 있다.
- 3) 과제 내 실증기관이 다수일 경우 총괄기관은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4) 해외과제의 경우 전문기관 대신 해외실증 협력기관이 해외 실증기관에 실증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5) 실증기관은 총괄기관(또는 전문기관)에서 의견조희를 요청할 경우 검토의견서를 10일 내 제출해야 한다. 실증기관에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총괄기관은 1회 추가 제출 독촉을 할 수 있으며 독촉 후 7일 내 미제출 시 총괄기관은 ‘불수용’으로 처리 및 통보할 수 있다.
- 6) ‘수용과제’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 실증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다. 선정평가 과제 진행 중 수용을 취소할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할 수 있고, 협약 후에 취소할 경우 협약 해약 할 수 있다.

7) 실증기관은 수요과제당 최대 1개의 신청 과제만 '수용' 할 수 있고,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수요과제로 신청하여 '실증기관 의견조회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실증기관에서 실증 가능성, 수요과제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1개의 과제를 선택해야 한다.

## 라. 발표평가

발표평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1) 발표평가는 실증계획서 및 실증기관 의견서 및 서류평가 의견서 등 종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 2) 발표평가표는 하기와 같이 수행하며, 지원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증기관이 공공(국내)인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li> <li>·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li> <li>- (시책과의 부합)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도</li> <li>- (시장 안착) 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성</li> <li>②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li> </ul>	50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규모)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li>- (시장의 파급성) 관련 기술·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ul>	30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li> <li>- (완성도)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TRL)</li> <li>- (실현가능성)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li> </ul>	20

〈실증기관이 민간(국내), 해외인 경우〉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배점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규모)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li>- (시장의 파급성) 관련 기술·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li> <li>-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시장 조사 현황, BM수립 현황,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li> <li>- (사업화 경쟁력) 시장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li> </ul>	50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도)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TRL)</li> <li>- (실현가능성)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li> <li>- (시급성) 기술의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li> </ul>	30
실증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익 증진)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시민편익증진 정도</li> <li>- (가능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 가능성</li> </ul>	20

4) 해외 실증기관 담당자는 희망할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피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마. 현장점검

현장점검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1) 해외 과제의 경우,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현장점검 외에도 비즈니스 인터뷰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가) 비즈니스인터뷰는 실증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외 실증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비대면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실증기관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해외실증 협력기관과의 인터뷰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비즈니스인터뷰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하에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직원(4대 보험 가입 기준)이 대체할 수 있다.

다) 비즈니스인터뷰는 영어로 20분 내외로 진행하며, 검토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지 실증 계획의 타당성 및 가능성
- ② 연구개발기간(12개월) 내 실증 가능성 여부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 의사소통 능력 등

2) 비즈니스 인터뷰 수행 후, 해외 실증기관 담당자는 인터뷰 결과를 해외실증 협력 기관 및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단, 해외 실증기관의 참여가 어려울 시 해외실증 협력기관에서 작성 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3) 비즈니스 인터뷰 수행 시, 전문기관, 해외실증 협력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다.

4)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비즈니스 인터뷰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 바. 최종선정위원회

최종선정위원회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1) 최종선정위원회 결과,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해 미선정 과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과제를 선정한다.

## 사. 선정결과 통보

선정결과 통보의 경우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아.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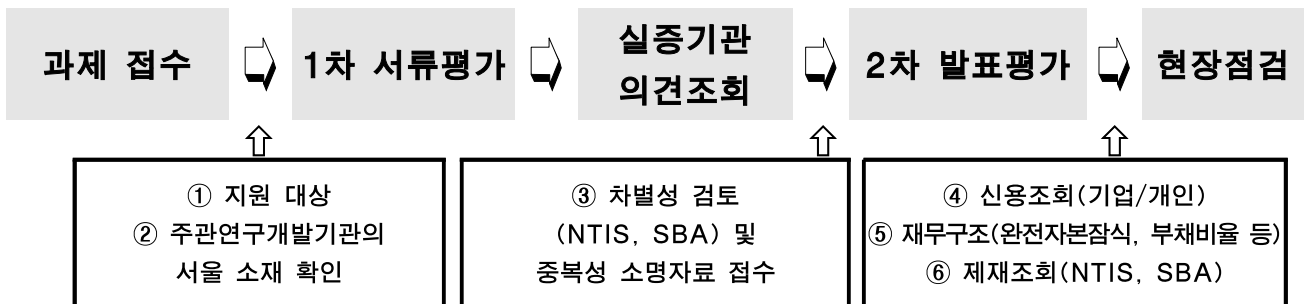
## 자. 기타 사항

기타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8. 요건검토

요건검토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검토 시기



### 나. 가점 및 감점 검토

1) 전문기관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7대 R&D*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1점	최종평가 확인 공문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전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1점	
AI 및 AI+X 분야,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분야의 기술과제인 경우	1점	전문기관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 기업 확인서
「약자와의 동행」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	2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하이서울기업	2점	Hi-Seoul 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
SBA 지원시설 입주기업	1점	입주기업 확인서

\*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블록체인, 로봇, 창조, 첨단제조, 양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말하며, 상세 내용은 해당년도 사업공고를 따름

2) 전문기관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①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최근 3년 이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선정평가 평점이 가·감점을 포함하여 총합이 만점(100점)을 넘을 경우 최대 점수는 만점(100점)까지만 인정한다.

5) 나. 가점 및 감점 검토에서 규정한 가점과 감점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 가.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나. 비목별 산정용도

비목별 산정기준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1) 비목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연구 재료비의 경우 실증 목적 연구 개발 결과물을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금한다.

### 다. 연구개발비의 조정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대상 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해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 라. 비목별 산정기준

〈연구개발비 구성 및 비목별 계상 기준〉

구분	연구개발비(100%)		
구성	시지원연구개발비 (75%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서 현금을 제외한 금액



구분	세목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영리기관 : 현물 계상 원칙, 〈인건비 나〉의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비 현금의 70%이내 계상 가능 비영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학생인건비	최소기준금액(현금 계상 원칙) 학사과정: 월 1,300천원 석사과정: 월 2,200천원 박사과정: 월 3,000천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2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가능
	연구재료비	연구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품목에 한하여 계상 ※ 실증 완제품을 단순히 제품 구매 및 보급하는 것은 불인정
	연구활동비	직접비(현물 포함)의 60% 이내에서 계상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20% 이내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의 20% 이내에서 계상
간접비		※ 1. 영리기관의 간접비 계상 불가 2. 비영리기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한 의무 산출기관이 고시한 간접비 고시비율 준용 (법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참조 <a href="https://www.gaia.go.kr/igifsv/indrfeelist.do">https://www.gaia.go.kr/igifsv/indrfeelist.do</a> ) 3.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현물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비 3.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

1) < 인건비 > 및 < 학생인건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현물계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연구자가 ①~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비 현금의 7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① 아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포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포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홈네트워크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RFID/USN	RFID/USN 서비스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서버기술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디지털콘텐츠	System Integration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Internet SW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가상현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지식정보보안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물리보안	
바이오·의료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ITS/텔레매틱스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학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의료정보표준화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력계통 계획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전력시장 운용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전력IT	수요예측·관리기술		
	에너지·자원		송·배전계통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신원전 기술					

- ②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 ④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 ⑤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 2) < 연구시설·장비비 >

-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나)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에 구입한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 3) < 연구재료비 >

- 가)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 나) 실증 완제품을 단순히 제품 구매해서 보급하는 비용은 연구재료비로 계상할 수 없다.

## 4) < 연구활동비 >, < 연구수당 >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동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지침을 따른다.

- 가) 연구활동비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6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
-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는

직접비(현물 포함)의 60%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 출장비-학회등록참가비, 학회 발표 출장 등 실증과 무관한 국·내외 여비는 계상할 수 없고, 계상 시 회수 할 수 있다.

5) < 위탁연구개발비 >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다.

나) 해외과제의 경우 해외실증협력기관이 해외 실증에 필요한 컨설팅,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비용을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다.

6) < 간접비 >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가)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다.

나) 실증과 무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계상할 수 없고, 계상 시 회수할 수 있다.

## 마. 연구개발비의 조정 및 지급

연구개발비 조정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바. 시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시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10. 협약

협약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협약의 체결

### 1) 실증계획 수립

가)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실증계획서를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미제출할 경우 1회 재독촉할 수 있으며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제출할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실증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일정 및 상호 간 의견 조율 등 실증계획 협의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 실증계획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증목표 및 세부기준, 실증방법, 일정,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 등
- ② 실증기관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증 세부내용 조정
- ③ 실증사업 종료 후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관리주체 등

라) 실증 목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과의 협의가 원칙이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증 목표를 협의할 수 있다.

## 2) 협약준비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① 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과제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라) 실증기관은 별도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하지 않고, “소유권 결정서”의 날인으로 같음하며, 사업 취지에 맞추어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실증 취소 및 기관 변경은 할 수 없다.

## 3)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 나)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연구개발비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해야하며(보험기간: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에 6개월을 가산한 날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 포기로 간주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마) 전자협약 체결 시에는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사항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타 적용사항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식 명	사업별 제출 여부	비고	제출방식
1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공 통	필수	시스템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해외 과제일 경우 국/영문)	공 통	필수	
3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공 통	해당시	
4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 통	필수	
5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	공 통	해당시	
6	기타 사업별 필요 서류			

#### 4) 협약기간

-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까지 중 어느 하루로 연구개발기간의 시작 일을 앞당길 수 있다.
- 나)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과제의 개발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 나. 협약의 변경

협약의 변경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다. 협약체결의 중지

협약체결의 중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1)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지원사업 협약체결일(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전까지 실증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라. 협약의 해약

협약체결의 중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1) 전문기관의 장은 실증기관의 파산, 폐업 등 사업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을 현장 점검 및 특별평가를 통해 파악한 경우 '실증기관 변경 후 수행'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 11. 시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시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1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연구개발기관의 중간보고서

- 1)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연구개발 및 실증 현황 및 진척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분기별로 연구개발기관에게 중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 2) 중간보고서 작성 시에는 추진 및 실증 현황, 실증 목표 달성 정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점검 의견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 나. 실증기관 중간점검

- 1)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간 중 실증장소에 방문해야 하며, 연구개발 결과물 및 실증 현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및 진척도를 파악해야 한다,

- 2) 실증장소 중간점검 시, 전문기관 소속 담당자와 실증 결과물 관련 기술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최종평가

#### 1) 최종평가(발표)

- 가)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최종보고서 제출 후 연구개발기관 자체비용으로 인증 받은 시험성적서, 시장·수요자 요구사항 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서식 내지 방침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 ①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최종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text{종합 평점} = \frac{\text{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 우수(80점 이상)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미흡(60점 미만)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 극히 불량(60점 미만) :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과제 최종평가 기준표- 국내 과제〉

구분	세부 평가지표
시장성 및 기술완성도	- 공공조달·민간 시장에 도입될 가능성 여부 - 해외진출 가능성 - 제품·기술의 품질과 안정성의 검증 - 기존 유사 제품·기술 대비 경쟁력 보유 정도
목표 달성 정도	- 정성·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실증성과는 목표를 달성 여부
혁신성	- 실증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 여부
공공성	-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

〈지원과제 최종평가 기준표-해외 실증〉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최종목표의 달성도	- 실증계획서 대비 최종 목표 달성 여부 (정량/정성) - 실증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및 시험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 (시험 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획득 여부)
실증의 기술성과	- 사업 기간 중 매출 발생,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여부 등 - 현지 특허출원·등록, 인증 등 해외 진출 위한 인증 획득 여부 - 해외 실증기관의 실증 아이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업화 가능성	- 해외 시장 분석, 경쟁사 파악 정도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사업화 역량의 적정성	- 관련분야 경력 및 전문성, 인력 구성의 적정성 -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여부
사업화 (예상) 성과	- 제품 실증으로 인한 기업의 (예상) 매출액, 현지 수주 실적 또는 가능성 - 개발 기술·제품의 타 국가 진출 사례 등

다) 상기 나)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아래의 성실수행 평가 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 “미흡” 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연구개발 일정 및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연구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① 성실수행 평가지표 ①,② 모두 “보통” 이상 판정을 받으면 “미흡”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② “미흡” 또는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재대상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
미흡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최대 2년 / 없음
극히 불량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최대 2년 /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라) 전문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안내하여야 한다.
- 마) “극히 불량”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불성실) 및 성과가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바) “미흡” 및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 사)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나. 실증확인서

- 1) 총괄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실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 실증확인서는 특정한 환경과 시점에서 실증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술의 보편적인 성능 담보하지 않는다.
- 3) 실증확인서는 총괄기관이 전문기관에게 전달하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15. 문제과제 등의 처리

문제과제 등의 처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현장점검

- 1)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연구개발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정산 미실시,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 실증 수행 불가(실증기관의 휴·폐업 및 파산 등)로 인한 동 사업 규정, 협약 위배 또는 과제 수행 불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시정·주의 조치”, “문제없음(계속)”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대상 : 중단(해약), 조기완료, 계속, 수사의뢰 검토, 실증기관 변경 후 수행 등의 판정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① 상기 1)에 따라 과제의 중단, 계속 등 판정이 필요한 경우

②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현장점검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시정·주의 조치 : 협약변경, 연구개발비 환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문제없음(계속)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전문기관은 “시정·주의 조치”로 판단된 과제에 대해, 협약 변경, 연구개발비 환원 등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은 현장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한다.

## 나. 특별평가

특별평가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1)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문제없음(계속)”, “중단(해약)”, “조기완료(우수, 보통)”, “수사의뢰 검토”, “실증기관 변경 후 수행” 중 하나로 판정하고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현장점검 및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6.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가. 실증 결과물의 귀속

- 1)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연구개발결과물(실증 결과물)의 철거가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실증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발 결과물 유지 여부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 17.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본 지원사업은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운영요령 '제9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및 관리지침 '18. 기술료 징수 및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18. 제재 및 환수 관리

제재 및 환수 관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른다.

### 〈과제의 중단, 미흡, 극히불량 및 포기〉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 제한	환수 (시지원 연구개발비)
중단 · 미흡 · 극히 불량	<input type="checkbox"/> 동 지침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의한 “극히불량”의 경우	2년	전액환수
	<input type="checkbox"/> 동 지침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의 “미흡” 수행인 경우 (평가 후 2년 내 본 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시 참여제한 해지)	2년	
	<input type="checkbox"/> 실증기관의 휴·폐업 또는 파산으로 인한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연구개발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기관 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파산으로 중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이내	
포기	<input type="checkbox"/>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시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5년	전액환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연구개	면제	

	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한 경우		
	○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 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반납액이 없는 경우(단, 포기 시점 및 사유에 따라 참여제한 3년 이내 제재 가능)	면제	-

## 19. 기타사항

본 운영지침은 관리지침 내 <붙임1>과 <붙임2>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한다.